



FHFP2026

영화제 출품 및 선정 규정

2026.03
FHFP2026영화제 운영위원회

FHFP2026 영화제 출품 규정

| 2026.04.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FHFP 2026(이하 "영화제"라 한다)의 작품 출품, 심사, 선정, 상영, 홍보, 기술 검수, 온라인 편성 및 협력 연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공정성, 명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화제의 성격)

FHFP 2026은 대학 기반 창작자의 영화 및 영상작품을 발굴·소개하고, 상영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영화제이다.

제3조(주최 및 운영)

1. 영화제는 FHFP 2026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가천대학교 필름하우스가 주최·주관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작품 접수, 심사, 선정, 상영, 홍보, 온라인 편성, 기술 검수, 아카이빙 및 협력기관 연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및 별도 공지에 따른다.

제4조(개최 형태)

1. 영화제는 오프라인 상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온라인 상영 또는 협력 플랫폼 연계를 병행할 수 있다.
2. 온라인 상영의 운영 여부, 기간, 접근 방식, 지역 제한 및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 공지한다.
3. 운영위원회는 기술적, 법적, 계약상 또는 운영상 사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 상영 또는 협력 연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축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구성, 상영 시간표, 운영 여건, 기술 환경 또는 기타 영화제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작품의 상영 일정, 상영 방식 또는 편성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장 정의

제5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품자"란 영화제에 작품을 접수하는 자를 말하며, 감독 또는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표 제출자를 포함한다.
2. "대표출품자"란 해당 작품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와의 연락, 서류 제출, 보완 대응, 권리 확인 등 실무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공동감독"이란 하나의 작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감독으로 함께 표기되거나 공동으로 연출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4. "학생 자격"이란 작품 제작 당시 대학(학부) 재학생, 휴학생의 지위에 있거나, 대학 기반 영화·영상 창작 공동체 활동 이력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심사용 스크리너"란 출품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는 심사용 영상 링크 또는 파일을 말한다.
6. "선정작"이란 심사를 거쳐 영화제 상영 또는 프로그램 편성 대상으로 확정된 작품을 말한다.
7. "상영본 마스터 파일"이란 영화제 상영, DCP 제작, 기술 검수, 온라인 연계 검토를 위하여 제출하는 최종 영상 파일을 말한다.
8. "기술 검수"란 영상, 음향, 자막, 파일 상태, 상영 가능성 및 온라인 편성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9. "협력기관"이란 영화제의 상영, 홍보, 온라인 편성, 유통, 기록 또는 기타 협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력하는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파트너대학"이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 또는 협약을 통하여 영화제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 동아리 또는 이에 준하는 창작 단위를 말한다.
11. "파일럿 특별상영관"이란 영화제 개최 전 또는 영화제 운영 기간 중, 운영위원회가 온라인 상영, 협력 플랫폼 연계, 시범 공개 또는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편성하는 상영 또는 공개 섹션을 말한다.

제3장 섹션 및 시상

제6조(출품 섹션)

영화제의 출품 및 편성 섹션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파트너대학(Partner Universities): 운영위원회와 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 체계를 가진 대학 또는 동아리의 작품으로 구성한다.
2. 경쟁(Competition): 파트너대학 작품 중 출품자가 경쟁 부문 참가를 선택하고, 운영위원회가 경쟁 섹션에 편성한 작품으로 구성한다.
3. 비경쟁(Non-Competition): 파트너대학 이외의 작품 또는 운영위원회가 비경쟁 상영작으로 편성한 작품으로 구성하며, 소개 및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
4. 파일럿 특별상영관(Pilot Special Screening): 운영위원회가 온라인 상영, 협력 플랫폼 연계, 시범 공개 또는 특별 편성을 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섹션으로 한다.
5.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구성상 필요할 경우 섹션, 상영 회차, 상영 방식, 상영 시간표 및 편성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6. 동일 작품의 최종 섹션 분류 및 편성 여부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7조(시상)

1. 경쟁 부문 작품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시상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상 부문, 상명, 수상 편수, 상금 또는 부상, 심사 기준 및 운영 방식은 운영위원회가 별도 공지한다.
3.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상, 협력기관상, 배급상, 관객상 또는 기타 명칭의 상을 운영할 수 있다.
4. 심사 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비경쟁 부문 및 파일럿 특별상영관 작품에 대한 별도 시상 운영 여부는 운영위원회가 별도 공지할 수 있다.
6. 협력기관 특별상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별도 자격 요건을 둘 수 있으며, 무비블록 특별상의 후보는 영화제 기간 중 온라인 동시상영 및 폐막 후 한시적 우선 상영에 동의한 작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운영위원회가 별도 공지한다.

제4장 파트너대학 협약 및 출품

제8조(파트너대학 출품)

1. 운영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협의 또는 협약이 이루어진 대학 또는 단위

의 작품은 파트너대학 섹션으로 출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파트너대학에 대하여 대학 또는 단위당 최대 2편 이내에서 본 상영 프로그램 편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3. 전항의 우선 검토는 출품 자격 충족, 제출물 완비, 마감 준수, 기술 검수 통과 및 결격 사유 부존재를 전제로 하며, 최종 상영, 수상 또는 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4. 파일럿 특별상영관 출품작은 제2항의 파트너대학 본 상영 프로그램 편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파트너대학은 본 상영 프로그램과 별도로 파일럿 특별상영관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6. 파일럿 특별상영관 출품작의 실제 편성 여부는 권리 확보, 출품자 동의, 제출물 완비, 기술 검수 및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7. 파트너 협약의 세부 효력 범위는 별도 협약서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장 출품 자격 및 대상

제9조(출품 자격)

1. 출품작의 대표출품자는 작품 제작 당시 대학(학부) 재학생, 휴학생이어야 한다.
2. 공동 연출, 공동감독 또는 공동 제작 작품의 경우, 대표출품자를 포함한 주요 창작 인력 중 1인 이상이 전항의 자격을 충족하면 출품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학, 휴학, 졸업, 대학 기반 창작활동 또는 소속 이력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출품 접수, 선정, 상영, 시상 또는 협력 연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출품 가능 작품)

1. 출품작은 출품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필요한 이용 허락을 확보한 영상작품이어야 한다.
2. 출품작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작품이어야 한다.

3. 출품 부문, 러닝타임, 제작연도, 장르, 형식 및 기타 세부 기준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공지하는 출품요강에 따른다.
4. 운영위원회는 영화제의 성격, 프로그램 구성 및 상영 환경을 고려하여 작품의 장르, 형식 또는 편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작품 분류)

1. 작품 길이 기준은 엔딩 크레딧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가. 단편: 40분 미만
 - 나. 장편: 40분 이상
2. 장르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확장형식, 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종 분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3. 장편 또는 특수 형식 작품의 편성 여부, 상영 회차 및 상영 방식은 프로그램 구성 및 상영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6장 출품 제한 및 결격

제12조(출품 제한 및 결격 사유)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품을 출품, 심사, 상영, 시상 또는 협력 연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 출품자가 작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 나.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음원권,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 또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상당한 경우
 - 다. 제출 자료에 중대한 허위 사실, 누락, 위조 또는 오기가 포함된 경우
 - 라.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범죄를 구체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 마.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중대한 차별, 혐오, 폭력 조장 등으로 영화제 운영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 바. 특정 정당, 정치인, 후보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한 직접적 선전 또는 조직적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 기술적 문제로 심사, 상영 또는 온라인 편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아.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공지한 출품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 기타 영화제의 공공성, 안전성,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목적에 비추어 운영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차. 상업적 광고 또는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품

카. 저작권 또는 이용 허락이 명확히 확보되지 아니한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를 포함한 작품

② 전항의 판단은 권리 확보 여부 및 분쟁 가능성, 기술적 상영 가능성, 프로그램 구성 적합성, 공공성 및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3조(소명 및 판단)

1. 운영위원회는 제12조의 사유와 관련하여 출품자에게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출품자가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3. 결격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최종 판단은 운영위원회가 한다.

제7장 출품 신청 및 접수

제14조(출품 신청)

1. 출품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방식에 따라 출품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출품 접수 기간은 2026년 4월 13일(월)부터 2026년 5월 15일 23시 59분까지로 한다.
3. 출품 신청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 전자우편 또는 운영위원회가 공지한 별도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4. 출품 신청은 출품신청서와 심사용 스크리너 제출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5. 출품자는 출품 신청 시 운영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온라인 상영, 협력 플랫폼 연계, 파일럿 특별상영관 편성 또는 기타 부가 편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회는 온라인 상영, 파일럿 특별상영관, 영화제 기간 중 온라인 동시상영, 폐막 후 한시적 우선 상영 및 협력 플랫폼 연계에 관하여 항목별로 동의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출품 정보)

1. 출품자는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작품명(국문 및 필요 시 영문)
 - 나. 러닝타임
 - 다. 제작연도
 - 라. 장르 및 형식
 - 마. 감독명 및 공동감독명(해당하는 경우)과 각 연락처
 - 바. 연출자 및 주요 스태프 정보
 - 사. 대표출품자 성명 및 연락처
 - 아. 작품 시놉시스
 - 자. 스틸컷
 - 차. 자막 유무
 - 카. 공개 또는 상영 이력(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 타. 온라인 상영 또는 협력 플랫폼 공개 가능 여부(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 파. 기타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 및 자료
 - 하. 심사용 스크리너 파일 혹은 링크
2. 출품 신청서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서약 및 동의 절차가 포함될 수 있으며, 출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제출 정보가 허위이거나 중대하게 미비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접수 무효, 심사 제외, 선정 취소 또는 상영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2(공동감독 작품의 대표성)

1. 공동감독 작품은 대표출품자 1인을 지정하여 출품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출품자를 통하여 모든 통지, 요청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2. 운영위원회가 대표출품자에게 한 통지, 승인 요청, 자료 제출 요청 또는 결과 통보는 공동감독 전원에게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공동감독 전원에게 대한 별도 통지 의무는 운영위원회에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6조(접수 완료 및 보완)

1. 운영위원회는 접수된 출품작의 형식적 요건, 제출물 누락 여부 및 기초 기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출품자에게 보완 또는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출품 정보 누락 또는 오류
 - 나. 링크 오류, 접근 권한 문제 또는 비밀번호 누락

- 다. 파일 손상 또는 재생 오류
 - 라. 기타 심사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기술적 또는 형식적 하자
3. 출품자가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작품은 무효로 처리되거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장 심사 및 선정

제17조(심사 원칙)

1. 작품의 심사는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단 또는 이에 준하는 심사 체계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2. 심사는 공정성, 독창성, 완성도, 연출력, 기술적 구현 및 영화제 취지와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3. 심사 기준, 방식 및 세부 절차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선정 및 결과 공지)

1. 운영위원회는 제출 자료 검토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작을 결정한다.
2. 선정 결과는 출품자에게 개별 통보하거나 영화제 공식 채널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다.
3. 미선정 사유, 개별 심사 의견, 점수 및 내부 검토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운영위원회는 공식 발표 전 선정 사실의 대외 공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편성 변경 또는 상영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선정작 제출 및 기술 규격

제19조(선정작 제출 의무)

1. 선정작의 출품자는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상영 및 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정작의 출품자는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오디오 파일(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 나. 자막 파일
 - 다. 포스터

- 라. 스틸컷
 - 마. 감독 프로필 및 작품 정보
 - 바. 예고편(보유 시)
 - 사. GV 참석 여부 및 참석 인원 등 운영위원회가 요청하는 프로그램 운영 정보
 - 아. 기타 운영위원회가 요청하는 홍보 및 상영 운영 자료
3. 지정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자료가 현저히 불충분하여 상영 준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정 결정을 취소하거나 상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제출물 및 기술 규격)

① 심사용 스크리너 제출 및 규격

1. 심사용 스크리너는 비공개 링크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정상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심사용 스크리너는 출품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다.
 - 가. 비공개 스트리밍 링크
 - 나. 비밀번호가 설정된 온라인 영상 링크
 - 다.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허용하는 방식의 시사용 링크 또는 파일 제출 방식
3. 심사용 스크리너는 출품작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별도 요청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4. 비밀번호가 설정된 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출품자는 해당 비밀번호를 반드시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5. 심사용 스크리너는 링크 오류, 파일 손상, 비밀번호 누락, 접근 권한 제한, 재생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보완 또는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품자가 지정 기한 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심사용 스크리너의 세부 기술 기준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공지할 수 있으며, 최소한 영상과 음향의 정상 재생, 전체 러닝타임 확인 가능성 및 자막 확인 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선정작 상영본 마스터 파일 제출 및 규격

1. 선정작의 오프라인 상영은 DCP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출품자는 DCP 제작이 가능

한 수준의 상영본 마스터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영본 마스터 파일은 MOV, MP4 또는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ProRes 422 HQ를 권장한다.
3. 상영본 마스터 파일은 FHD(1920×1080) 이상 해상도를 권장하며, 작품의 원래 화면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상영본 마스터 파일은 24fps를 권장하며, 최종 색보정 및 후반작업이 완료된 버전이어야 한다.
5. 상영본 마스터 파일은 제출 이후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또는 교체가 제한될 수 있다.
6. 오디오는 상영본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오디오 마스터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도 제출 시에는 24bit, 48kHz 이상의 WAV 파일을 권장한다. 멀티채널 오디오의 경우 출력자는 채널 구성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제출 시 파일명에 채널 정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 자막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SRT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상영 및 온라인 편성 여부에 따라 국문 자막 또는 영문 자막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자막 파일은 최종 상영본 기준으로 싱크가 정확하여야 하며, 자막 누락, 오타자, 번역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영 및 편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9. 자막, 번역문, 영문 제목, 영문 시놉시스 및 인명 표기 등 언어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1차 책임은 출력자에게 있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0. 포스터, 스틸컷, 감독 정보, 시놉시스, 예고편 및 기타 홍보자료는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인쇄물, 상영 안내물, 보도자료, SNS, 협력 플랫폼 내 소개 페이지 등 영화제 운영 및 홍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11. 운영위원회는 기술 검수 및 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상영 동의서, 권리 확인서, 추가 홍보자료 또는 기타 필요한 자료 제출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12. 상영본 및 제출 자료는 운영위원회 또는 협력기관이 제시하는 기술 규격과 제출 방식에 따라야 하며, 기술 검수 결과 상영 또는 온라인 편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보완 또는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3. 기술 검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된다.
 - 가. 영상 재생 여부
 - 나. 해상도, 프레임레이트 및 화면비 적합성
 - 다. 음향 상태 및 채널 정상 출력 여부
 - 라. 자막 정상 출력 여부 및 싱크 정확성
 - 마. 파일 손상 여부
 - 바. DCP 제작 가능 여부
 - 사. 기타 상영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14. 지정 기한 내 상영본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술 검수상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작품은 상영, 온라인 편성, 특별상 심사 또는 협력 플랫폼 연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5. 파일명 규칙, 제출 경로, 용량 제한, 업로드 방식, DCP 제작 세부 기준 및 온라인 플랫폼 제출 규격 등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공지하는 기술 가이드에 따르며, 파일명은 <별첨 1>의 양식에 따른다.

③ 온라인 상영 및 협력 플랫폼 제출 자료·규격

1. 운영위원회는 온라인 상영, 협력 플랫폼 연계, 파일럿 특별상영관, 영화제 기간 중 온라인 동시상영 또는 폐막 후 한시적 온라인 상영을 위하여 출품자 또는 선정작 출품자에게 별도의 온라인 상영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온라인 상영 또는 협력 플랫폼 연계 대상 작품의 출품자는 운영위원회 또는 협력 기관이 요구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영화 영상 파일
 - 나. 영화 대표 이미지(포스터로 갈음 가능)
 - 다. 영화제 및 기타 로고 원본 파일
 - 라. 각 영화별 썸네일용 스틸 이미지
 - 마. 각 영화별 자막 파일
 - 바. 기타 운영위원회 또는 협력기관이 온라인 공개, 플랫폼 등록, 홍보 또는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전항의 자료 중 필수 제출 여부 및 세부 제출 방식은 운영위원회 또는 협력기관이 별도로 안내하며, 온라인 상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4. 필수 제출 자료는 원칙적으로 영화제 상영 개시일 또는 온라인 공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협력기관이 별도 기한을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온라인 상영용 영화 영상 파일은 다음 각 호의 권장 규격에 따른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협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형식의 제출도 가능하다.
 - 가. Video Format: H.264
 - 나. Frame Rate: 15~60fps
 - 다. Video Bitrate: 1080p 기준 10~20Mbps
 - 라. Audio Format: AAC
 - 마. Sample Rate: 48,000Hz
 - 바. Audio Bitrate: 320Kbps
 - 사. 권장 영상 용량: 20GB 내외(최대 47GB 이하 권장)
6. 영화 대표 이미지는 ai 또는 psd 등 원본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포스터 이미지로 갈음할 수 있다.
7. 영화제 및 기타 로고 자료는 ai, eps, pdf, svg 등 벡터 원본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8. 각 영화별 썸네일용 스틸 이미지는 검은 테두리 또는 레터박스 없이 1920×1080px 규격의 jpg 또는 png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협력기관이 별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9. 각 영화별 자막은 srt 또는 vtt 형식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자막 파일의 정확성, 싱크, 표기 및 번역의 적정성에 대한 1차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다.
10. 협력기관은 운영 환경상 필요한 경우 추가 규격, 권장 규격 또는 제한 기준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으며, 출품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전 각 항의 자료가 지정 기한 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형식·규격 또는 권리 상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작품을 온라인 상영, 협력 플랫폼 연계, 파일럿 특별상영권, 특별상 심사 또는 기타 온라인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상영본의 활용 및 기술 처리)

1. 운영위원회는 상영 안정성과 관람 환경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상영본에 대해 테스트 상영, 변환 작업, DCP 패키징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2. 전항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품의 내용적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3. 기술 처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출품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 온라인 상영 및 협력 플랫폼 연계

제22조(온라인 상영)

1. 영화제는 선정작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온라인 상영을 운영할 수 있다.
2. 온라인 상영은 출품자 또는 선정작 출품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며, 운영위원회는 출품 접수 시 1차 동의를 확인하고, 선정 이후 별도 절차를 통하여 최종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 온라인 상영의 운영 여부, 기간, 공개 범위, 접근 방식 및 기술 조건은 운영위원회가 별도 공지한다.
4. 온라인 상영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가. 출품자의 동의 여부
 - 나. 작품별 권리 상태 및 이용 허락 확보 여부
 - 다. 기술 적합성
 - 라. 협력 조건 및 프로그램 운영 방향
5. 전항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작품은 온라인 상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출품자는 온라인 상영 동의 이후에도 권리 관계의 변동, 제3자 이의 제기, 배급 또는 공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온라인 상영 동의 및 권리 확보)

1. 운영위원회는 영화제의 온라인 상영, 협력 플랫폼 연계, 파일럿 특별상영관, 영화제 기간 중 온라인 동시상영, 폐막 후 한시적 온라인 상영 기타 이에 준하는 온라인 편성을 위하여 출품자 또는 선정작 출품자로부터 별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출품자는 온라인 상영 또는 협력 플랫폼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공개 범위 및 운영 방식에 필요한 저작권 및 제반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거나 이용 허락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출품자는 작품에 포함된 모든 요소(음악, 영상소스, 사진, 이미지, 폰트, 출연자 초상, 상표 등)에 대하여 오프라인 상영뿐 아니라 온라인 공개 및 플랫폼 업로드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출품자는 온라인 상영 동의 이후 권리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3자와의 분쟁, 제한 또는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회는 출품자가 표시한 동의 여부 및 권리 상태를 바탕으로 온라인 상영 또는 협력 플랫폼 연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권리 미확보, 분쟁 발생, 동의 철회 또는 기술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작품을 온라인 상영 또는 협력 연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온라인 상영에 관한 세부 조건, 상영 기간, 공개 범위, 플랫폼, 접근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 공지하거나 개별 안내할 수 있다.
7. 온라인 상영 또는 협력 플랫폼 연계에 대한 동의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확정 시점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8. 온라인 상영 이후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배급 제한, 제3자 이의 제기 등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온라인 상영 및 협력 플랫폼 연계에 대한 확정 시점은 운영위원회가 출품자에게 상영 또는 공개 확정 사실을 통보한 시점으로 본다.
10. 전항의 확정 이후 출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온라인 상영 또는 공개를 철회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작품의 상영 취소, 시상 제외, 향후 FHFP 출품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 출품자는 온라인 상영 또는 협력 플랫폼 연계에 동의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협력기관이 요구하는 온라인 상영용 영상 파일, 이미지, 로고, 썸네일, 자막 및 기타 부속 자료를 지정된 기한과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2. 출품자가 전항의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자료가 온라인 서비스 운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작품의 온라인 상영 또는 협력 플랫폼 연계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의3(폐막 후 한시적 우선 상영 및 공개 제한)

1. 운영위원회는 협력 플랫폼 연계 작품에 대하여 영화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폐막 후 한시적 우선 상영을 운영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상 작품, 상영 기간 및 운영 방식은 운영위원회가 별도 공지하거나 개별 안내한다.

3. 출판자 또는 선정작 출판자가 전항의 우선 상영에 동의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작품을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거나 업로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4. 전항의 예외 적용 여부, 범위 및 조건은 운영위원회와 협력기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22조의4 (정당한 사유의 범위)

1. 본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 배급 계약, 플랫폼 계약 또는 제3자와의 권리 계약에 따라 온라인 상영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 나. 음악, 영상, 이미지, 폰트, 초상 등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이용 허락이 온라인 공개 범위까지 적법하게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3자의 권리 침해 주장, 법적 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이의 제기가 발생한 경우
 - 라. 출연자, 제작 참여자 또는 권리자의 요청으로 공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마. 기타 관계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로 인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2. 출판자는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제23조(협력 플랫폼 연계)

1. 영화제는 협력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하여 일부 작품의 온라인 공개, 소개, 유통 또는 기타 연계를 검토할 수 있다.
2. 협력 플랫폼을 통한 공개 또는 유통은 작품별 별도 동의, 계약 또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3. 출판자는 협력 플랫폼 연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요청하는 온라인 상영 동의, 권리 확인 서류, 추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미제출, 권리 미확보, 동의 철회 또는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작품은 협력 연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정산, 수익 배분, 지급 방식, 세무 처리 등 구체 조건은 별도 계약서, 동의서 또는 정산 가이드에 따른다.
6. 권리 침해 또는 분쟁 소지가 확인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온라인 공개 또는 유통을

보류,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7. 영화제는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출품작의 상영에 대하여 상영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8. 협력 플랫폼을 통한 유통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 배분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서에 따른다.

제23조의2(파일럿 특별상영관)

1. 운영위원회는 영화제의 온라인 상영, 협력 플랫폼 연계, 시범 공개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파일럿 특별상영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2. 파일럿 특별상영관 출품작은 파트너대학 본 상영 프로그램 편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파트너대학은 본 상영 프로그램과 별도로 파일럿 특별상영관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4. 파일럿 특별상영관 출품작의 편성 여부는 권리 확보, 출품자 동의, 제출물 완비, 기술 검수 및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5. 파일럿 특별상영관의 운영 방식, 공개 범위, 상영 기간, 플랫폼 및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 공지한다.

제23조의3 (상영료 및 대가)

1. 출품작의 영화제 상영, 온라인 공개 또는 협력 플랫폼 연계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출품자에게 상영료, 사용료 또는 기타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출품자는 출품 신청 시 전항의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다만, 협력 플랫폼을 통한 수익 발생 또는 별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조건에 따른다.

제11장 권리, 책임 및 자료 활용

제24조(권리 보유 및 책임)

1. 출품자는 출품작과 제출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저작권 및 제반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음악, 영상소스, 사진, 이미지, 폰트, 초상, 상표 기타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

출품자는 해당 권리 이용에 필요한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3. 출품작 또는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미성년자 출연자 또는 기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인물이 포함된 경우 출품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동의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공동감독 또는 공동창작 작품의 경우, 출품자는 출품, 상영, 온라인 공개, 홍보 활용 및 협력 플랫폼 연계에 관하여 공동감독 및 권리관계자 사이의 필요한 동의와 권한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6. 공동감독 상호 간 또는 공동창작자 상호 간의 권리, 명의, 크레딧, 수상 귀속, 공개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에 개입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7. 출품자는 출품작 및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음원권, 퍼블리시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8. 전항과 관련하여 분쟁, 클레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기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출품자는 해당 문제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협력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출품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손해 및 권리구제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는 출품자가 제출한 권리 관련 자료 및 진술의 진위 여부를 실질적으로 조사하거나 검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출품자의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다.
10. 운영위원회는 온라인 상영, 플랫폼 연계,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기술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버 장애, 네트워크 오류, 화질 저하, 접근 제한 기타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의2 (손해배상 및 면책 범위의 확대)

1. 출품자는 본 규정 위반, 권리 미확보,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제3자 권리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전항의 손해에는 운영위원회 및 협력기관에 발생한 직접적 손해뿐 아니라, 간접적 손해, 영업상 손실, 클레임 대응 비용, 법률 비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출품자가 제출한 자료 및 진술을 신뢰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실질적 검증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운영위원회 및 협력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온라인 상영, 플랫폼 운영, 기술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홍보 및 아카이빙 활용)

1. 운영위원회는 영화제 소개, 프로그램 안내, 보도자료 작성, 홍보 콘텐츠 제작, 관객 안내, 결과 기록 및 아카이빙을 위하여 출품자가 제출한 작품 정보 및 홍보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출품작의 일부 장면, 스틸컷, 포스터, 예고편, 시놉시스, 감독 정보 등을 영화제 홍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편집 또는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영화제 홍보, 협력기관 연계 및 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제출 자료 및 작품의 일부를 발췌, 편집, 자막화, 재구성하여 썸네일, 예고편, 숏폼, 카드뉴스, 프로그램 소개물, 보도자료, 공식 홈페이지, SNS, 인쇄물, 협력 플랫폼 내 소개 페이지 등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4. 전항의 활용은 영화제 운영, 기록 및 협력기관 연계 목적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출품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5. 출품자는 제출 자료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다.
6. 전 각 항에 따른 자료 활용은 별도의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출품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 또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 (홍보 활용 범위의 확대)

1. 운영위원회는 영화제 홍보, 기록, 아카이빙, 협력기관 연계 및 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출품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췌, 편집, 재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 가. 예고편, 하이라이트 영상, 숏폼 콘텐츠, SNS 게시물
 - 나. 카드뉴스, 포스터, 배너, 프로그램북 및 인쇄물
 - 다. 협력 플랫폼 내 소개 페이지, 홍보 콘텐츠 및 추천 섹션
 - 라. 기타 영화제 홍보 및 운영 목적에 필요한 2차 저작물
2. 전항의 활용은 별도의 대가 없이 이루어지며, 출품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6조(통보 의무)

출품자 또는 선정작 관계자는 작품의 출품, 선정, 상영, 공개 또는 권리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장 철회, 취소 및 제재

제27조(출품 철회)

1. 출품자는 접수 마감 전까지 운영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출품을 철회할 수 있다.
2. 접수 마감 이후 또는 선정 결과 발표 이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선정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영 직전에 철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향후 출품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제28조(선정 취소 및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작품의 출품, 선정, 상영, 시상 또는 협력 연계 대상 자격을 취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출품 자격 또는 권리 보유에 관한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출 자료의 중대한 허위, 누락 또는 위조가 확인된 경우
3. 기술 검수 통과가 불가능하거나 기한 내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작품 관련 권리 분쟁으로 상영 또는 공개가 곤란한 경우
5. 운영위원회의 정당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경우
6. 기타 영화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9조(제재)

운영위원회는 영화제 운영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 또는 본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FHFP 출품 제한, 상영 취소, 시상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장 개인정보 및 기타

제3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운영위원회는 출품 접수, 심사 진행, 결과 통지, 상영 운영, 홍보 협의, 온라인 편성 및 기타 영화제 운영을 위하여 출품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 및 운영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필요 시 협력기관과의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제31조(규정의 해석 및 개정)

1.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2. 운영위원회는 영화제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사항은 공식 채널을 통하여 공지한다.
3. 별도 공지된 출품요강, 기술 가이드, 제출 안내, 동의서 및 개별 통지 사항은 본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31조의2 (준거법 및 관할)

1. 본 규정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2. 본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로 한다.

제32조(부칙)

1.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026년 04월 02일

대표: FHFP2026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오하진